
입 법 정 보

2018-3호



목 차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
3.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5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6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7
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7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8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8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9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9
1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0
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
14.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5.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
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3
1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9.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4
20.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6
2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7
2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9
23.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9
2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22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2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3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3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4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26
3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7
3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7
3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9
3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9
37.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30
38.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30
3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1
40.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
4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1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3
4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4
45.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34
4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7
4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8
4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9
5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0
51. 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
5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3
5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4
5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5
5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6
5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6
57.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47
58.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47
5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9
6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0
6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1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
6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2
6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2
65.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교육부).....	53
6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54

정부입법 예고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 29. ● 마감일자 : 2018. 3. 12.
-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가.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신설(안 제37조의17)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는 연수교육 시기, 교과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한 계획 및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 29. ● 마감일자 : 2018. 3. 12.
-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가.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업무 위탁기관 근거 신설(안 제19조)
 -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3.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1. 29.
 - 마감일자 : 2018. 3. 12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등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급 공무원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아울러, 제7조제5항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으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 29.
 - 마감일자 : 2018. 2. 5.
-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수당으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3호, 2018.1.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체계를 수당 지급체제로 정비하려는 것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 29.

● 마감일자 : 2018. 3. 1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으로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최근 신설된 난임 치료 휴가의 신청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들의 육아휴직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 (현행 제2조 제2항 삭제)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법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영세사업장은 임금·승진·해고에 있어 남녀간 차별이 있어도 이를 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2호 신설)

-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공시대상기업 집단에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다. 난임치료 휴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설(안 제10조 신설)

-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난임 치료 휴가를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청 방법과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안 제10조의2)

-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 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허용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아휴직 허용제외 사유인 근속기간 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별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부과 조항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 1항의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 30. • 마감일자 : 2018. 3. 12.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정, ’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인의 경영규모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 나.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가(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 30. • 마감일자 : 2018. 3. 12.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정, ’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어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신설)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30.

• 마감일자 : 2018. 3. 12.

-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사항이 없음.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30.

• 마감일자 : 2018. 3. 12.

-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사항이 없음.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30.

• 마감일자 : 2018. 3. 12.

-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사항이 없음.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30조제1항제3호 신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1. 30.

• 마감일자 : 2018. 3. 12.

-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사항이 없음.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8. 1. 31. ● 마감일자 : 2018. 3. 12.
- 국무총리 소속의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어 범정부적 대응보다 부처의 특수·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 위원회 소관을 부처로 이관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함.
- 주요내용
 - 가.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제6조)
 - 나.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제7조)

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 31. ● 마감일자 : 2018. 3. 12.
-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위탁제조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과 동시에 외국의 우수한 기술 이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 실무규정을 정비하여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표시·기재사항을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입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확대 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3조)

외국의 의약품 제조업자들이 국내 제약회사 등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득할 수 있는 대상 의약품으로 재심사를 받았거나 받을 의약품(신약 등)과 희귀의약품을 정하여 선진 기술의 이전을 통한 관련 산업의 신성장동력 마련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통합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 등)

「약사법」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을 통해 임상시험에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포함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다. 의약품 갱신업무에 대한 지방청 위임규정 개정(안 제20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리한 의약품 품목신고등에 대해 해당 신고의 갱신업무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의약외품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규정(안 제74조의2 등)

의약외품에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명칭, 제조·수입자 상호, 손상 제품에 대한 교환방법 등을 첨부문서에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과 동일한 정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마.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78조 등)

종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금지 규정이 「약사법」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을 통해 상향입법 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바. 사전 우수제조기준(GMP) 평가자료 완화 대상 확대(안 별표 1)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외에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허용 대상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마약, 제조소 이전 의약품, 연간생산 제조단위가 1개 이하 의약품에 대해서도 3개가 아닌 1개 제조단위 제조기록서만 사전 GMP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 생물학적제제등 보관기준 완화(안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자는 해당 의약품만을 위한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를 사용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의약품판매자등에 비해 가중된 보관기준이 적용되었던바,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여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등에게 전용 냉장·냉동고가 아니라도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따른 보관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4.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 31. • 마감일자 : 2018. 3. 13.
-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신고)하는 사항에 관하여, 「약사법」 제31조의5에 따른 갱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업무의 위임·위탁 조항을 개정하여 갱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15.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 31. • 마감일자 : 2018. 3. 12.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어린이제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 ([별표 2])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삭제
-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 ([별표 3])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면봉을 삭제

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 31.
- 마감일자 : 2018. 3. 1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별표 2])
 -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 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별표 4], [별표 5])
 -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1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 31.
- 마감일자 : 2018. 3. 13.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삭제(' 17.12.19 개정 공포, 법률 제15270호)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가 폐지되어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삭제
-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삭제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삭제
-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인증 취소의 절차) 삭제

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 31.
- 마감일자 : 2018. 3. 13.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일부 개정(‘17.10.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입주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법 제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9.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어선의 복원성 자료의 승인,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사업장의 지정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5008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5.1.)됨에 따라 복원성 자료의 승인 절차,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사업장의 지정신청과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원부의 등본·초본 발급(안 제30조 단서 신설)

-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어선원부가 발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 도모하고자 함

나. 어선의 복원성 자료의 승인 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 어선법상 복원성 유지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복원성 자료의 승인신청 및 절차, 기준적용, 해당자료 승인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의 실효성과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형식승인의 신청 등(안 제59조 개정)

- 어선용품 등 형식승인 신청(변경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시험기관 시험의뢰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및 공단 및 선급법인에 제출에 관한 사항 등 형식승인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형식승인에 대한 신뢰성과 해당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라.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안 제59조의4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형식승인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마.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등(안 제59조의5, 제59조의6, 제59조의7 신설)

-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절차,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일부 시험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공신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등(안 제60조의5 신설)

- ‘우수’라는 용어로 인해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정’

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어선법에서 위임한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처분기준(안 제76조의2 신설)

- 공단 및 선급법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 검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전문성 및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0.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흡수선 초과 항행금지 및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등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검사업무 등의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 (법률 제15008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5.1.)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대행업무의 취소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적으로 끄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를 상향하여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안 제3조 신설)

-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 등 정상작동 조치를 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함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4조의2 신설)

- 형식승인시험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추는 등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형식승인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다. 대행업무의 취소 등(안 제16조의2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대행기관의 대행업무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하도록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 최근 391홍진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북한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나 203현진호가 추자도 남방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불법조업을 하다가 전복된 사건과 같이 어선위치발신장치나 무선설비의 정상작동 또는 수리 등 조치를 아니하여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낮아 준법의식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어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법률 제15359호, ‘18.1.16.공포, ’ 18.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안 제2조)
 -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지사 또는 출장소, 사장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을 등기하도록 규정
 - 나. 이전등기(안 제4조)
 -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
 - 다. 변경등기(안 제5조)
 - 안 제2조제2항의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

라. 그 밖에 공사의 업무(안 제7조)

- 법률에 정해진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공사 여유자금의 운용 등을 추가적인 공사 업무로 규정

마. 이익금의 배당(안 제8조)

- 법 제12조에 따른 주주 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바.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안 제9조)

- 공사의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하고 난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사. 사채의 발행(안 제10조)

-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목적, 발행방법, 발행총액, 이율, 상환의 방법 및 기한, 발행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안 제20조)

- 공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규정

자. 경영건전성 감독사항(안 제21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및 결산,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이의 감독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차. 금융위원회의 경영건전성 검사(안 제22조)

- 금융위원회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하거나 금융감독원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3조, 별표1)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감경 사항을 규정

2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2. 6.
-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항만기술안전과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개정이유
 -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로표지법」 전부개정·공포('17.10.31)
 - 나.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18.5.1)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 가.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10년단위로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규정
 - * 기본계획의 성과 분석,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 소요재원 투입의 효율성 등
 - 나.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선박에 위치, 항법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성 요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등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정관의 기재사항 개정(안 제17조)
- 기관명칭을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변경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사단법인과 관련된 회원의 가입과 탈퇴, 총회에 관한 사항 등 삭제
-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 별표 4)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교수요원, 교육과정 등 지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별표 4]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비용 지원의 세부사항 규정
- 마. 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축소(안 제26조)
 -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소유 부표류,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 업무 중 부표류 수리 업무만 위탁하고 그 외는 민간개방
 -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16)
- 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자격인원 요건 완화(안 별표 3)
 - ‘항로표지, 전기전자, 측량 각 분야별 1명 이상’에서 ‘항로표지 기능사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고용으로 개정
 - * 2017년 갈등관리 종합계획(해양수산부)에 따른 갈등과제

2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개정이유

-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로표지법」 전부개정·공포('17.10.31)
- 나.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18.5.1)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안 제2조)

- 해상 풍력발전단지, 파력·조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에 항로표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

* 현재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나.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시행계획의 시행 및 변경 절차 등 규정

다.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 결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4조)

-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 해역여건, 해상교통 상황, 인근에 설치된 항로표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 신설

라. 항로표지 기능 측정 등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5조)

- 항로표지의 고시기능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능을 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항로표지의 종류와 측정항목 등 규정

마. 수중암초 제거 시 준수사항 신설(안 제8조)

-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때 선박 통항이 가능한 수심확보, 최적의 공법 선정, 주민 및 통항선박 안전대책 수립·시행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정

바. 항로표지 현황의 종류 신설(안 제12조)

- 신고사항이던 현상변경이 허가사항인 현황변경으로 일원화되고,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항로표지 현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광파표지의 경우) 명칭,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높이 등

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9조)

- 관리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처리하는 업무순서에 따라 조문정리

아. 위탁관리업자 행정처분 절차 등 보완(안 제25조, 별지 제19호 및 제20호서식)

-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처분명령서를 발급하고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기록·관리하도록 하

고 절차를 보완

- 위탁관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소유자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정

자.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32조)

-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여 소유자부담 완화

차.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등 신설(안 제39조, 별지 제27호 ~ 제29호서식)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과 지정서 발급 및 지정서 재발급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 신설

2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해양구조활동 지원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출동비)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 민간해양구조대원 출동수당 상향(제12조 제2항 별표2 개정)
 - 해양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출동비)을 시간당 6,800원(8시간 기준, 순경 3호봉 봉급월액/30)에서 시간당 10,892원(경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상향 조정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7.12.12.공포, 6.13.시행/ ‘18.1.16.공포, 7.17.시행)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실태 조사·연구,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복지급여신청 관련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 개선(안 제3조의3제1항)
- 나. 청소년 한부모 실태조사 등(안 제4조제2항)
- 다.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등(안 제9조의4)
- 라.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안 제9조의5)
- 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기준 구체화(안 제9조의6)
- 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별표 1)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7.12.12.공포, 6.13.시행/ '18.1.16.공포, 7.17.시행)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실태 조사·연구,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복지급여신청 관련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호바목)
- 나.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안 제12조제4항)
- 다.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안 제17조의4)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2. 13.

- 석유사업자의 현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부령 제277호, ' 18.7.1.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부를 현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1 제2호라목)

-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인 근거법조문으로 수정

나. 석유사업자의 보고사항 규정 정비(안 별표8 제8호다목)

- 석유관리원에서 보고받은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공사에 종합통지

다. 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6호서식)

- 시·도에 등록신청 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없음”으로 변경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2. 1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93호, 2017. 9. 19. 공포, 2018. 3. 20.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 제24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설명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인 사실과 임대 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임대주

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사항, ' 17.12.10.)

○ 주요내용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안 별지서식 제24호 및 제25호)

-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인 사실과 임대 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함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사항, ' 17.12.10.)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을 명확하고, 제6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련 공적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범위 명확화(안 제49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제6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나.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 명확화(안 제50조)

-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을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신청, 변경신고, 임대차계약신고 사항 등에 관한 대장의 전자적 관리, 임대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임대주택 현황 정보 및 통계의 생산으로 구체화하여, 각 기능을 전담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함

다.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허용
(안 제4조)

- “임대차계약 신고” 관할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신청, 변경
· 말소신고도 민간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도 가능
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로 신청·신고하는 경우 주민
등록주소지로 신청·신고사항을 이송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3. 1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 제13조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보호절차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6. 기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3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2. 1.

• 마감일자 : 2018. 2. 6.

-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운영 정원 한도를 상향하고,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3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2. 2.

• 마감일자 : 2018. 2. 7.

-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및 친환경에너지 육성 강화 등 에너지 분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신재생에너지 정책단으로 개편하고, 그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9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며, 부서 역할 및 업무명확화를 위한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현행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 분야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 1) 한시조직인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9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명칭 변경
- 2) 기존 에너지자원정책관 밑의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로 명칭 변경
-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과를 신설

- 4)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밑의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통폐합
 - 5) 기존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를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및 신재생에너지보급과로 각각 이관
 - ① 신재생에너지과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민관 협력
 - ② 신재생에너지과 → 신재생에너지보급과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보급 촉진 및 기반조성
 - 6) 기존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소관의 기후변화협상 관련 업무를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
- 나. 산업 분야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 1) 산업기반실 명칭은 반도체, 철강, 기계, 로봇, 조선 등 소관 업무를 포괄하지만 실의 역할과 미션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산업혁신성장실로 변경
 - 2) 기존 산업정책실 산업기술정책관 에너지기술과를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으로 이관
 - 3)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고용 관련 총괄부서로서 미션 부여 및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 혁신과 명칭을 산업일자리혁신과로 변경
 - 4) 기후변화 협상업무를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라 기후변화산업환경과 명칭을 산업환경과로 변경
 - 5) 지역 간 산업협력, 지역투자 보조금, 지역사회 경제진흥, 지역산업위기 대응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지역투자과 명칭을 지역경제진흥과로 변경
 - 6) 기존 입지총괄과가 관장하는 법률(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②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에 적합하고, 생활 주거 관련 입지정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지총괄과 명칭을 산업입지과로 변경

3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2.
- 마감일자 : 2018. 3. 14.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 노인성 질환의 범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안 제1조의3, 별표 1의3 신설)
 - 인권교육 내용, 시간, 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고시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사망 등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퇴소기간 등을 정함(안 제17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 다.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15,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3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2.
- 마감일자 : 2018. 3. 14.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 노인성 질환의 범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안 제11조의2 신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
 - 나. 국민들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안 제19조 제2항)

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인권교육 추가(안 제20조의5)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기관 업무에 인권교육을 명시함

라.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0조의14 신설)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사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6조제21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4호)

37.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2. 2.

● 마감일자 : 2018. 3. 14.

○ 보험계리사가 IFRS17 도입 예정 등 보험계리 선진화에 따른 시장수요 증대에 맞춰 충분히 공급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차시험 면제대상기관에 보험계리업자 추가(안 제47조제1항)

- 5년이상 보험계리업무 종사시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에서 정한 보험계리업자를 추가.

나. 2차시험 각 과목 합격시 시험면제기간 확대(안 제47조제5항)

- 2차시험 과목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의 향후 시험면제기간을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으로 확대.

38.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 예고일자 : 2018. 2. 2.

● 마감일자 : 2018. 2. 5.

○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세청에 설치한 조사 분석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국세청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부 업무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총액인

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하부조직 및 그 밖에 기능과 인력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2. 2.
 - 마감일자 : 2018. 3. 1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7.10.31) 및 시행(2018.5.1)됨에 따라 공단 상임이사 임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함.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상임이사 선임시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효율을 제고 하고자 함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추천 방법 근거 신설(제10조의2)

40.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2. 2.
 - 마감일자 : 2018. 2. 7.
- 우정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준법감시담당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경영기획실장의 분장 업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4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2. 2.
- 마감일자 : 2018. 3. 14.
-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및 경찰·해양경찰 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 공포(법률 제14839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방법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경찰·해양경찰별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경찰·해양경찰별 위촉·임명된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

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등 업무를 총괄함.

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 지원(안 제11조)

- 1) 위로금 지급대상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
- 2) 위로금은 36개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체적 산정방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 3) 위로금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고, 매월 1회 위로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함.

라. 위로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 1)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가부 및 지급액 등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해양경찰청에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 이상은 의료인 등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2)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전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위험직무와 관련 있는 부서 담당자 중 위원장이 임명함.
- 3)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위험직무공상 인정여부, 위로금지급규모 등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4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5.
- 마감일자 : 2018. 2. 12.
- 물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과 생물자원보전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및 국립야생동물보전 연구원 건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조직 정원표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홍보 업무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2. 5.
- 마감일자 : 2018. 2. 9.
- 행정안전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민참여정책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행정안전부의 정원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가 적용되는 한시조직 중 국민참여정책과를 삭제하고,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총액인건비 활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지방자치분권실의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4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2. 5.

• 마감일자 : 2018. 3. 19.

- 보호소년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년원 설치·운영 민간위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1) 국가 업무인 소년원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
- 2)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3)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

45.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2. 5.

• 마감일자 : 2018. 3. 19.

- 소년원의 설치·운영, 소년보호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소년원을 확충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년보호업무의 민간위탁(안 제4조)

- 1)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다만,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소년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계약의 체결(안 제5조)

- 1)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2) 계약기간은 당해 수탁자가 소년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다.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조)

- 1)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2) 위탁업무 정지 명령시 소속 공무원이 정지된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라.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조)

- 1)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경영의 부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 내지 제19조)

- 1) 소년보호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2) 그 밖에 소년보호법인의 임원·재산 및 회계 등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하여 소년보호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영소년원의 부실운동을 방지하도록 함

바. 민영소년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조)

- 1)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년보호법인에게 매년 당해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 2) 연간 지급 경비의 지급 기준은 투자한 고정자산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소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조)

- 1) 민영소년원의 직원의 임면은 당해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아. 위탁업무의 감독·감사(안 제26조 및 제27조)

- 1)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 업무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2)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함.

자. 보호소년의 처우(안 제31조 내지 제34조)

- 1)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자의 처우는 같은 유형의 보호소년을 수용·보호하는 국가운영 소년원의 처우 수준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 2)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지도·감독을 위해 파견한 소속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보호소년의 인권침해를 예방함.
- 3)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및 퇴원 과정에서 감독관의 의견 및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함.

차. 공무원 의제 등(안 제35조)

- 1) 소년보호법인의 임직원 중 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소년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카. 손해배상(안 제36조)

- 1) 소년보호법인은 그 임직원과 민영소년원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함.
- 2)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타. 벌칙(안 제38조, 제39조)

- 1)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 없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민영소년원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년보호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함(양벌규정).

4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5.

• 마감일자 : 2018. 2. 8

-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두는 복지예산심의관 및 연금보건예산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5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정책국에 두는 경영정보과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에서 2019년 2월 28일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된 복지예산심의관, 연금보건 예산과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

47.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2. 6.

• 마감일자 : 2018. 3. 19.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특수지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기간 기준 마련 등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며, 기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안 제16조 및 제24조)
 - 1) 전문직위에 대한 가산점을 현행 경력평점 가산점에서 특정직위 가산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력평정 가산점에서 삭제하고 특정직위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함
 - 2) 전문직위에 대하여 영 제27조의 제1항의 필수보직기간(2년)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 1점을, 필수보직기간(2년)을 초과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나. 특수지 근무경력 등 가산점 부여 방식 개선(안 제24조)

- 1)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인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 2) 특수지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가산점 인정기간에 대한 기준을 영제31조의6 제2항의 경정평정대상기간으로 명확히 함

다. 기타 제도개선 등(안 제24조제3항, 제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

-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기를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함
 - * 규칙 시행(안) 전에 임용된 사람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 2) 수시평정의 경우 근무평정의 예외에 따른 조정사유로 한정하고, 승진명부 작성시 실적가산점에 대한 점수를 3점으로 정정함

4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6.
- 마감일자 : 2018. 3. 19.
-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예선의 선령과 대기장소의 기준 및 공동배선 절차 등을 정하고, 예선 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며,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변경하는 등 현행 무역항에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예선 운용선령 기준 (안 제10조제8항 신설)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의 운용선령이 도입됨에 따라 예선의 선령을 30년까지 운용하되,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선령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선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기함

나. 예선 대기장소 기준 (안 제10조의3 신설)

- 1)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예선 정계지 기준을 겹쳐서 접안 할 경우 3겹 이내로 하되, 대기장소의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겹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계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의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예선의 증가를 억제함

다. 예선의 공동 배정 절차 등 (안 제13조의2 신설)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업자의 예선 배정방법의 자율선택제가 도입 됨에 따라 공동배정을 위한 참여자의 규약 장성과 관할 행정청 등 제출, 전자매체 공표 등의 절차를 정하여 도입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함
- 2) 또한, 예선업자가 공동배정방식을 선택한 경우, 공표한 방식에 의해서만 예선을 배정하도록 하여 예선배정의 질서유지와 단독 배정과의 혼선을 차단함

라. 위험물 하역 안전장비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신설 (안 제17조의3)

- 1)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운송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 설치하여야 할 장비로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 단밸브등으로 정하여 위험물 하역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기함

4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6.

● 마감일자 : 2018. 3. 19.

-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선의 수급조절 및 서비스평가 방법 등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통신 관련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에 관한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무역항에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절차 등 (안 제7조의2 신설)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 수급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함
- 2) 아울러, 예선수급에 영향이 큰 예선의 선령현황과 예선 정계지 여건을 수급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계획의 적정성을 기함

나.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안 제7조의3, 4, 5 신설)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선서비스평가 방법과 절차, 결과의 공표방법 등을 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기함
- 2) 아울러,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우대 조치로 보상과 예선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불이익 조치로 예선 공모 시 감점과 예선증선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서비스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기함

다. 개선명령 대상 규정 (안 제20조의2)

- 1) 개정 법률에 따라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예선업자의 예선지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예선지원 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지원을 약속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여 예선업의 질서 확립을 기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안 제22조제2항 신설)

-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통신 관련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실제 주체인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위임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함

5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6.

● 마감일자 : 2018. 2. 9.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안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 시행령에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제3항)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안 제31조)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 마.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안 제31조의2제1항)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함.
- 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도는 임명하도록 함
- 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3)
-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1. 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2. 6.
 - 마감일자 : 2018. 3. 19.
-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천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및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다음 해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3조 신설)

5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7.
- 마감일자 : 2018. 3. 19.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교육 강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방법 확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등 석면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필요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명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결과 및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관리 의무화(안 제28조제4항)
 -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기능 위탁조항 신설(안 제31조제2항 신설)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석면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교육 강화(안 제33조)
 - 1) 현행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후 1년에서 3개월로 교육의무 기간을 단축함
 - 2) 최초 교육은 현행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시간에서 집체교육 8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교육 2년 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도입하는 등 석면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함
 - 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방법 현실화(안 제37호1항 단서 신설)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 1) 홈페이지 게시해야할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용량이 클 경우 열람으로 공개 가능하도록 함
 - 2)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신고시 제출된 석면조사 결과서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마. 발주자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필요사항 및 변경 신고 사유 신설(안 제42조 신설)

-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함
- 2)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변경사유를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와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로 규정함

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명시(안 제42조의2 신설)

- 1) 감리원 상주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농도 측정, 폐기물 관리 감독,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민원 또는 피해사실 발생시 지자체 보고, 감리원 무단이탈 방지 및 감리원 안전 보호, 감리 완료보고 등 시행령이 위임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함

5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7.
- 마감일자 : 2018. 3. 19.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포함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를 규정하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석면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관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7조제1항)

- 1)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연도 말에 수립하는 현실을 감안,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던 것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함.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석면함유제품의 회수·판매 금지 등을 명한 경우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 석면조사로 인정받은 경우 새롭게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안 제31조)

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 규정(안 제33조제1항제3호)

1)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하고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이 부재하므로, 석면농도가 0.01개/cm³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안 제51조제3항제1호 신설)

바.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제2호)

1)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430m²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5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7.

● 마감일자 : 2018. 2. 27.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07호) 개정(2017.7.17.)시 자동차 분야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를 제작차와 운행차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에서 누락된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등을 다시 반영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6.12.22.)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을 해당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에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 인력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1)에서 삭제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별표 9)에 다시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에 포함(안 제2조, 별표 2, 별표 13)
- 나. 실내공기질 분야 항목 추가 등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9)
- 1)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신규로 포함된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를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에 추가하고, 권고기준에서 제외된 오존(O3)은 측정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변경함(제4호)
-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시료채취 및 현장 측정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에 활용하려면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함(비고 제3호의2)
- 다.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실내공기질 분야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에서 오존측정기를 삭제함(별표 10 비고 제2호라목)

5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2. 8.
 - 마감일자 : 2018. 3. 20.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정, '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농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신설)

5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2. 8.
 - 마감일자 : 2018. 3. 20.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 개정, ’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 할 경우 그 지원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 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 추가(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업무에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57.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2. 14.

-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외교부 정책기획관 밑에 두는 한시조직인 정책공공외교담당관과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정부혁신 기능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업무중 부내 정부3.0관련 업무를 부내 정부혁신관련 업무로 변경하고,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여 직급별 정원을 따로 두려는 것임.

58.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3. 21.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며,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일자를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기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항·제5항)

- 1)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 2)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
- 3)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

나.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호)

- 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사망일의 전날로만 소급이 가능하여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 아닌 퇴직일의 전날로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 2)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에 사망하여 사후(死後) 특별승진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및 소방 조직 차원의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현행 7일에서 3일로 개정(안 제49조제3항)

-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 2) 응시원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5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3. 21.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제조·수입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는 「제품안전기 본법」이 개정(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고조사 명령의 요건과 사고조사 방법·절차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업자에게 사고조사 명령을 내리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3제1항)
 - 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횟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정도,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사업자의 사고조사 이행능력 등
 - 나. 사고조사 방법은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기존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4조의3제2항)
 - 다. 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사고조사 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제4항)
 -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5항)
 - 라. 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제6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1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7항)

6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4. 10.

-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제품군을 별표에서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5조, 제34조, 제46조)
- 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
 - 1)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0조)
 -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사항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51조 및 제52조)
- 라. 구매대행, 병행수입에 대한 특례 신설
 - 1) 구매대행 특례제품 명시(안 제56조)
 - 2)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57조)
 - 3)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하도록 함(안 제58조)

6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4. 10.

-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14조제3항)
- 나. 법률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제품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미준수 등으로 유해한 생활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시·도지사에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 다.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신설(안 제19조)
- 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규정 신설(안 제20조 [별표 3])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3. 21.

-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2017년말 종료될 예정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전원 활성화 및 수요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 열병합용(100MW 미만의 규모만 해당)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6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3. 21.

○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여 동일구간내 최고/최저금액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5)

나. 보건소 등 공공요양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안 별표 5)

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선 설정 및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부당비율 산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5)

라. 행정처분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함(안 별표 5)

마.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별표 5)

6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3. 21.

○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담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월평균 부담금액 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 내 의료급여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2, 별표 3)
- 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의료급여기관에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안 별표 2, 별표 3)
- 다. 월평균 부담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선 설정 및 부담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부담비율 산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2, 별표 3)
- 라. 행정처분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 하는 대상 등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별표 3)
- 마.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별표 2, 별표 3)

65.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3. 21.

- 「과학교육진흥법」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 수학, 정보교육을 진흥하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과학교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명 개정 (과학교육진흥법 시행령 →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시행령)
- 나. 과학·수학·정보 교육 융합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1)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가능하도록 함
 -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련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3)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하고, 예산범위 내 수당·경비가 지급가능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이 정하도록 함

6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2. 9.
- 마감일자 : 2018. 3. 21.

-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2~3 배 높은 수준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 역량을 잠식하여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그 밖에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 확대

-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3)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함

나.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 1) 도급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 1)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함.
- 2) 도급인이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 1)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 1)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공급·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 1)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양도·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1) 근로자 사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 3)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 4)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파.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 법의 장·절을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